

제148회(임시회)
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본회의회의록

제2호(부록)
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

목 차

1.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	2면
2.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	3면
3. 서울특별시종로구일회용품사용규제등위반사업장에 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	4면
4. 행촌지구 내 정비계획(완충녹지) 변경안 의견청취 결과보고서	6면
○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	8면
○서울특별시종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	10면
○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	12면
5. 구정질문 서면답변서	14면

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5. 3. 23.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시민행정위원회

1. 審査經過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5년 3월 14일 · 종로구청장 원안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5년 3월 14일 원안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148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
제1차 시민행정위원회(2005. 3. 21) 상정 ·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행정관리국장 박 중 인)

가. 제안이유

이사회 운영을 내실화하여 공단 경영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사외이사제를 도입하고, 결산기한을 지방공기업법과 일치시키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시설관리공단의 이사를 5인 이내에서 7인 이내로 함 (안 제7조)
-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5조에 의거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의 비율과 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임 · 직원의 겸업금지대상에 단서 조항을 신설함 (안 제9조, 안 제12조)
- 지방공기업법 제66조에 의거 결산기한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“3월 내”에서 “2월 이내”로 변경함 (안 제21조)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박 성 열) —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(생 략)

5. 討 論 要 旨 (없 음)

6. 修 正 案 의 要 旨 (없 음)

7. 審 査 結 果 : 원안가결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)

서울특별시종로구 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05. 3. 23.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시 민 행 정 위 원 회

1. 審査經過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5년 3월 14일 · 종로구청장 원안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5년 3월 14일 원안 회부

다. 상정일자 : 제148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

제1차 시민행정위원회(2005. 3. 21) 상정 ·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생활복지국장 조 성 린)

가. 제안이유

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○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→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(안 제32조)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박 성 열) —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(생 략)

5. 討 論 要 旨 (없 음)

6. 修 正 案 의 要 旨 (없 음)

7. 審 査 結 果 : 원안가결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)